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의안 번호	231
----------	-----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평창군수

강원도에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2항, 제40조제9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 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의 이유

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2항에 대해 강원도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특정한 목적 수행,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 이란 문구가 그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재의를 요구합니다.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제9호에 대해 강원도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 이란 문구가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참고문서(강원도 재의요구) 1부. 끝.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년월일 : 2020.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추가·삭제하고,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며, 그 밖의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 1)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 4호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 2)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추가 (안 제6조제2항)
-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27조제6항으로 수정(안 제22조 제4항)

4)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전면 수정(안 제31조)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안 제40조제5호)

6) 그 밖의 수정 사항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시에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 취득·처분, 단 토지 외 재산은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수정 (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적용기간 →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안 제40조제4호)

다) 농업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안 제40조제6호)

나.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 요건 정비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그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로 한도로 수정(안 제20조의2)

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산물, 가공품·공산품, 동·식물 등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 추가(안 제20조의2제2항)

3) 9.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추가(안 제40조)

4) 군수가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추가(안 제28조제4항)

다. 그 밖의 사항 정비

1)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 삭제(안 제11조)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대체재산 취득)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

하여야 한다.

2)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정(안 제4조제2항)

가) 부위원장 : 재무과장 → 행정지원국장

나) 재무과장 : 당연직 위원

3) 용어 및 띄어쓰기

가) 대부재산 → 공유재산(안 제8조제1항)

나) 실태조사시 → 실태조사 시(안 제8조제3항)

다) 관리관은 → 재산관리관은(안 제13조제1항)

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안 제20조의2)

마)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안 제22조제2항)

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안 제32조)

사) 대부하는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안 제3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평창군 공고 2020-153(2020.2.4.~2.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2127호/2020.2.27.)

3)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기획실-2127호/2020.2.27.)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복지과-5562호/2020.2.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시에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의 취득·처분 단, 토지 외 재산은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부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시”를 “실태조사 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산물, 가공품·공산품, 동·식물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수가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건물 및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의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하는”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용기간”을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⑥ ~ ⑫ (생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시에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의 취득·처분, 단 토지 외 재산은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생략)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 공유 재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실태 조사 시 -----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대체재산 취득)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재산관
리관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신 설>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품
질보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산물, 가공품·공산품, 동·식물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
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재산 -----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군수가 전통시장 및 골목경
제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공
유재산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⑤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건물 및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삭 제>

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⑤ -----
----- 제3항-----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② -----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④ (생략)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나. (생략)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2. 3. (현행과 같음)

4. -----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8. (생략)

<신설>

6.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7.·8. (현행과 같음)

9.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및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익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익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

계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 (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대환
연락처	(033) 330-2270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평창군 공포예정 자치법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재의요구

1. 도 교육법무과-2963(2020.3.20.)호와 관련입니다.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조례개정 검토의견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평창군수(기획실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회계과장

전결 2020. 3. 27.

협조자

시행 회계과-10451

(2020. 3. 27.)

접수 기획실-3448

(2020. 3. 27.)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2315

팩스번호 033-249-4046

/ kkm1215@korea.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붙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담당자
<p>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2 제2항(신설)</p> <p>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제 23 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p> <p>○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 “특정한 목적 수행,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 이란 문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이는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 붙임 :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5(2020.3.19.))</p>	<p>강원도청 회계과 김경미 (249-2315)</p>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담 당 자
<p>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제9호(신설)</p> <p>9.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23 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률에 근거없이 군수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 수의매각 시 그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p>* 붙임 :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5(2020.3.19.))</p> <p>【조례개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29 조 제 1 항제 19 호다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5 호를 연계하여 검토】</p>	<p>강원도청 회계과 김경미 (249-2315)</p>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강원도지사(회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강원도 회계과-8464(2020. 3.11)로 우리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제 23 호 및 제 38 조제 1 항제 23 호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할 수 있는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사용·수익허가) 특정한 목적을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매각)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제 23 호 및 제 38 조제 1 항제 23 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조례 개정안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조례 개정안 본문에서 “특정한 목적 수행,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 이란 문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수의매각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이며, 법률에 근거없이 군수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 수의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0. 3. 19.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335

(2020. 3. 19.)

접수 회계과-9536

(2020. 3. 19.)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관) 608호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7

팩스번호 044-204-8967

/ ramses0623@korea.go.kr / 대국민 공개



평창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강원도 회계과-10451(2020. 3. 27.)호와 관련하여, 평창군 공포예정 자치법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재의요구서 1부.
- 2. 조례안(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참고문서(강원도 재의요구) 1부. 끝.

주무관	이성근	재산관리담당	김진범	재무과장	이대환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부군수	송기동	군수	2020. 4. 3. 한왕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0675

접수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 <http://www.pc.go.kr>

전화번호 033-330-2275 팩스번호 033-330-2590 / sungguly83@korea.kr / 비공개(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관련
참 고 · 설 명 자 료

목 차

1. 공유재산조례 개정관련 참고 설명자료 1	1
2. 공유재산조례 개정관련 참고 설명자료 2	3
3. 타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례	4
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13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1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관련 참고 설명자료 1)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9호

<평창군 안>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개정안 마련 의도 >

- 행정안전부에서 2019. 7. 2일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취지를 보면(회계제도과-3414, 2019. 7.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1항 19호 다호 신설관련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유치하려는 시설이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계약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활성화를 위한 수익계약 장기대부 대상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토록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입법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음.

평창군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3호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추진하였으며,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하더라도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분야로 한정하여 수익매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9. 12. 24, 2007추165 판결)에서 보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위의 법령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 않다. 라고한 취지를 고려하였음.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유사한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증 고흥군의 사례와 같이 조문을 작성하였음.

※유사사례 : 경기도, 전라남도, 고흥군, 진도군, 여주시, 신안군, 연천군, 강진군, 양구군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9. 12. 24, 2007추165 판결)

< 관련 내용만 발췌인용 >

...위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가 수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는 그 위임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조항에(제38조 제1항 제23호)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 인천광역시(원고)와 인천광역시 의회(피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관련 참고 설명자료 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평창군안)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안 마련 의도 >

○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이라고 하면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오삼불고기 거리 등), 전통시장 사무실, 공동창고, 공동조리시설 등을 고려한 표현이면

해당 민간·사회단체라고 하면 해당 전통시장별로 상인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상인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같은 조문으로 작성 한 것임.

※유사사례 : 고령군,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양양군 등
13개 자치단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의 생산 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1.] <개정 2017.1.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 등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여 5년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주업체에게 공장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공장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7.1.5.]
5. 국가나 도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때 <2017.1.5.>
6. 도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범위 내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건물에 대하여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증축하거나 신축하려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9. 도로 등의 용도가 폐지되어 기존의 도로에 접한 사유지가 맹지가 된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용도폐지 된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각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신청 자격은 해당 사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5.]
10.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11.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12.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전문개정 2014.1.10.]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도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6.12.29., 2019. 5. 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11.16.)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2019. 5. 30.)
6. (삭제 2019. 5. 30.)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도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8. 도지사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양구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개정 2011.8.12.> [전문개정 2015.11.7.]

5.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개정 2011.8.12.> [전문개정 2015.11.7.]

6. <삭제 2015.11.7.>

7. <삭제 2015.11.7.>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5.11.7.>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1.7.>, <개정 2019.6.12.>

10.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1.7.>

11.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7.>



본문검색



조문이동



책갈피



메모



확대/축소



인쇄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여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8.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5.10.29.)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지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10.)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1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8.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3.12.30)



본문검색



조문이동



책갈피



메모



확대/축소



인쇄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 11. 0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 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0. 12. 30 >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05.>
 6.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지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12.27.>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12.27.>
-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12.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수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제1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 소유 토지(이하 "시유지"라 한다)의 위치, 형태, 규모 또는 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시유지의 기준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을 그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과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시유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그 산업용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산업용지와 동일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산업용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4. 시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사유토지의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면적의 시유지를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2649호로 2014. 5. 21. 시행된「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 나.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읍·면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여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그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부지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1,000제곱미터 이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수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익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2015.12.31.)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4. 12. 17)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하기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1.)(개정 2019.07.05.)
6.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방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1.)
7.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1.)
8. 「사노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07.05.)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07.05.)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해당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07.05.)
11.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07.05.)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원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도랑·둑으로써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때,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연천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연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7.08., 2015.12.28.>

1. <삭제 2008.01.1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5.12.2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5.12.28.>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8.01.16., 2013.07.08., 2015.12.28.>
5. 군 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01.16.>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28.>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28.>
9.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28.>
10.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 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공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5.12.28.>
11.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28.>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7추165, 2009. 12. 24.]

【판시사항】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12조 제5항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전문】

【원 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인천광역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

【변론종결】

2009. 10. 29.

【주 문】

【주 문】

피고가 2007. 11. 1.에 한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7. 9. 18. 주문 기재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였다.

나.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시행(제4조), 수익계약으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7조 제2항), 매각가격(제12조), 매각 및 대부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조례안 각 계쟁조항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조례안 제4조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1호) 등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된 용지의 매각 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퇴출업종 등의 고시와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권한이 장관에 속하는바, 그러한 법률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

임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9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된 용지의 매각 등은 위 실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경제자유구역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조례안 제7조 제2항

(1) 제3호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물류단지 내의 시행자·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13조 제2항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 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는 수의계약에 의해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물류시설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물류터미널 사업자 외에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용지도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물류시설법 제13조 제2항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용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는 물류시설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제6호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6호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6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가 정한 ‘제조업체’,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의 유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6호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제7호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매각대상용지의 위치, 형상 등으로 보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가 위임한 사항은 인천광

역시 공유재산조례 제40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는 그 위임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7호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다. 조례안 제12조

(1) 제4항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 제4항은 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에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이러한 조례안 제12조 제4항이 일정한 경우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 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제2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개발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이 사건 조례의 상위 법령에 해당할 수 없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도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5항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 제5항은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조성한 용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100억 원 이상의 매각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직영기업의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

고(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되,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지방자치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지방공기업법 제40조), 지방직영기업의 판매목적용지는 예산에 기재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 제19조 제1항 제11호).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 등에 우선 적용되는 점(제6조)과,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을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문언 및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에서 제외된 판매목적용지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 제5항이 지방직영기업의 판매목적용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100억 원 이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지방직영기업의 판매목적용지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례안이 수의계약 및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판매목적용지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영기업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시장의 계약체결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환경에 따른 신속적 대응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례안 제12조 제5항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라. 조례안 제19조 제4항 중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조례안 제19조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해진 조세감면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19조 제4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한 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례안 제19조 제4항의 규율대상에는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장관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알림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19.7.2. 제29939호)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에, 각 시·도는 사업소 및 재산관리부서와 시·군·구에 통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제9조제1항제11호('19.7.2.),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75조제4호('20.1.3.)

2.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수익계약 장기대부 특례 지원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시설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고, 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물품의 무상대부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산관리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재산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토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2019. 7. 2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3414 (2019. 7. 2.) 접수 회계과-21937 (2019. 7. 2.)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6 팩스번호 044-204-8967 / ck6931@korea.kr / 대국민 공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방자치단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가.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간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복합시설과 공용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시설 건립 추진 시 제약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로서 공용재산으로 한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모든 재산으로 허용 확대하려는 것임

다. 입법효과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유활용 확대

2.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위탁에 혼란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임

다. 입법효과

- 지자체의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에 대한 업무처리 명확화

3. 지자체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가. 제·개정 이유

-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익계약 장기대부 및 대부료 감정, 영구시설물 축

조가 가능하며, 그 시설은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및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유치하려는 시설이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안되는 문제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대상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토록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임

다. 입법효과

- 지자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자율성 확대

4. 지자체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안 제75조제4호)

가. 제·개정 이유

- 지자체 물품 대부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며, 기타 공익사업이나 위탁업무 사용, 재해복구 등의 목적에 대해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지자체에서 유희 물품을 업무시간 외 취약계층 등(조례로 규정)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입법효과

- 물품 무상대부제도를 활용한 공유경제 구현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공 유 제 산 및 물 품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1) 자치단체간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복합시설과 공용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시설 건립 추진 시 제약
- 2) 현행 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로서 공용재산으로 한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모든 재산으로 허용 확대하려는 것임
- 3)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유활용 확대가 기대됨

나.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 1)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 민간위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위탁에 혼란이 있음
- 2) 이에 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임

다. 지자체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 1)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장기대부 및 대부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그 시설은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및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유치하려는 시설이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안되는 문제가 있음
-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대상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토록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임

라. 지자체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안 제75조제4호)

- 1) 지자체 물품 대부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며, 기타 공익사업이나 위탁업무 사용, 재해복구 등의 목적에 대해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

2) 지자체에서 유희 물품을 업무시간 외 취약계층 등(조례로 규정)에
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27. ~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p> <p>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 10. (생략)</p> <p>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u></p> <p>② (생략)</p> <p>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의 <u>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p> <p>①-----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 ----- ----- <u>영구시설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관리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생략)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1. ~ 18. (현행과 같음)

19.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부하는 -----

가. (현행과 같음)

나. -----

----- <후단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785